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99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최보운 · 최수진 · 김재섭
안철수 · 김선교 · 이성권
김미애 · 이달희 · 유상범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제26조 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 ----- -----.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제8항----- ----- ----- ----- -----.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u>고시</u>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고시</u> <u>하여야 한다.</u>
---	---